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7일

양 구 군

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2. 사업(대지위치)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51-14
3. 도로위치 :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51-3, 51-9, 51-11 (3필지)
4. 도로길이 : 75m
5. 도 로 폭 : 4m
6. 도로면적 : 300㎡
7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				소유자	비고
			공부면적(㎡)	길이(m)	너비(m)	면적(㎡)		
양구군 양구읍 공수리	51-3	대	495	6	4	24	강*귀	도로지정동의
	51-9	대	905	22.25	4	89	강*귀	
	51-11	전	1,299	46.75	4	187	강*귀	
	3필			75		300		